[별첨 서식1-13]

표준 비밀유지 계약서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갑"이라 한다)와 엘에스웨어(주)(이하 "을"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갑이 <u>저작권기술 성능평가 시스템 기능개선 및 운영</u>사업 (이하 "본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자료·장비 등에 대한 내용(신규 포함)을 "을"에게 제공하는바, "갑"이 제공한 자료·장비 등에 대해 "을"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자 본 계약을 체결한다.
- 제2조 (비밀정보) ① "비밀정보"라 함은 본 계약의 체결 전후 또는 직접 혹은 간접을 묻지 않고, "본 용역"을 위해 "갑"이 구두, 서면 또는 기타 방법으로 제공한 일절의 유용한 경영상 또는 기술상의 정보를 말한다. 비밀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 1. "갑"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구성도
 - 3. 사용자계정·비밀정보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 5.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시스템 도입 현황
 - 7. 방화벽·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의 설정정보
 -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갑"의 내부문서
 - 9.「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 10. 그 밖에 "갑"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②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정보는 비밀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1. "갑"의 제공이 있기 전부터 이미 공지 또는 공개의 사실이었던 정보
 - 2. "갑"의 제공이 있기 전, 이미 "을"이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을 서면으로 증명가능한 정보
 - ③ 비밀정보에 대한 소유권은 "갑"이 계속 보유한다.
- 제3조 (유효기간) "을"은 본 계약의 유효기간과 관계없이 제공받은 "갑"의 비밀정보 보호의무를 진다.
- 제4조 (비밀정보의 사용금지) "을"은 "갑"의 비밀정보를 "본 용역"을 위해서만 사용하여야 하며, 타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5조 (비밀유지) ① "을"은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인지하게 된 "갑"의 비밀정보를 사전서면에 의한 승낙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 "을"은 "본 용역"에 관한 계약사실 및 내용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③ "을"은 "본 용역"을 위해 필요한 자에게만 비밀정보를 취급할 수 있게 하며, 해당하는 자는 본 계약에 규정하는 의무와 같은 의무를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
- 제6조 (자료 등의 관리) ① "을"은 모든 비밀정보를 엄중히 보관하며 "갑"의 허락없이 는 복제 등 기타 비밀을 누설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할 수 없다.
 - ② "을"은 "갑"이 제공한 비밀정보와 비밀정보에 기초하여 작성된 일체의 자료(허가를 받아 복사한 사본을 포함)를 신중한 주위를 가지고 관리·보관하여야 한다.
 - ③ "을"은 "갑"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갑"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와 비밀정보에 기초하여 작성한 일체의 자료(허가를 받아 복사한 사본을 포함)를 반환하여야 한다.
- 제7조 (손해배상) ① "을"은 본 계약에서 정하는 각 규정을 위반하여 "갑"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② 하도급 및 재하도급의 경우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의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을"은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 단 불가항력의 사유로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을"은 불가항력의 사유를 증명함으로써 "갑"의 손해 배상 청구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
- 제8조 (정보의 지적재산권) ① "본 용역" 사업의 이행에 의해 발생한 산출물 및 결과물 (개발된 SW 모듈 포함)의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은 공동으로 소유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안 관련 산출물 및 결과물의 소유권, 지적재산권 및 2차적 저작물작성권은 "갑"이 소유한다.
- 제9조 (정보의 회수) "갑"이 제공한 자료·장비·서류·기타 당해 계약과 관련된 정보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을"은 정보의 원본 및 사본(수정물도 포함)을 남기지 않고 모두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에 발생하는 비용은 "을"이 부담하기로 한다.
- **제10조 (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기간은 "본 용역"의 계약기간과 동일하며,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다.
 - ② 전항의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비밀유지의무는 제5조에 따른다.
- 제11조 (양도 등의 금지) "을"은 본 계약의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



게 양도, 하도급, 담보제공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12조(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내용은 "갑"과 "을"간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유효하게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있다.

제13조(준용규칙)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은 "갑" 과 "을"의 "본 용역" 사업 관련 계약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 (효력) 본 계약은 계약 체결시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다만, 본 비밀유지계약서를 체결한 일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가 다를 경우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에 발효되기로 한다.

제15조 (관할)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법적 분쟁의 해결은 "갑" 소재지의 관할 법원에 의한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19 . 5 . 2 .



갑 한국저작권위원회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1/2/5층 을 엘에스웨어(주) 서울 금천구 서부샛길 606 대성디폴리스 A동 1801호

성 명:임원'선(인)

성 명:김 민



표준 비밀유지 계약서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갑"이라 한다)와 <u>엘에스웨어(주)(</u>이하 "을"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갑이 <u>저작권기술 성능평가 시스템 기능개선 및 운영</u>사업 (이하 "본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자료·장비 등에 대한 내용(신규 포함)을 "을"에게 제공하는바, "갑"이 제공한 자료·장비 등에 대해 "을"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자 본 계약을 체결한다.
- 제2조 (비밀정보) ① "비밀정보"라 함은 본 계약의 체결 전후 또는 직접 혹은 간접을 묻지 않고, "본 용역"을 위해 "갑"이 구두, 서면 또는 기타 방법으로 제공한 일절의 유용한 경영상 또는 기술상의 정보를 말한다. 비밀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 1. "갑"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구성도
 - 3. 사용자계정·비밀정보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 5.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시스템 도입 현황
 - 7. 방화벽·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의 설정정보
 -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갑"의 내부문서
 - 9.「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 10. 그 밖에 "갑"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②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정보는 비밀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1. "갑"의 제공이 있기 전부터 이미 공지 또는 공개의 사실이었던 정보
 - 2. "갑"의 제공이 있기 전, 이미 "을"이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을 서면으로 증명가능한 정보
 - ③ 비밀정보에 대한 소유권은 "갑"이 계속 보유한다.
- 제3조 (유효기간) "을"은 본 계약의 유효기간과 관계없이 제공받은 "갑"의 비밀정보 보호의무를 진다.
- 제4조 (비밀정보의 사용금지) "을"은 "갑"의 비밀정보를 "본 용역"을 위해서만 사용하여야 하며, 타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5조 (비밀유지) ① "을"은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인지하게 된 "갑"의 비밀정보를 사전서면에 의한 승낙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 "을"은 "본 용역"에 관한 계약사실 및 내용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③ "을"은 "본 용역"을 위해 필요한 자에게만 비밀정보를 취급할 수 있게 하며, 해당하는 자는 본 계약에 규정하는 의무와 같은 의무를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
- **제6조 (자료 등의 관리)** ① "을"은 모든 비밀정보를 엄중히 보관하며 "갑"의 허락없이 는 복제 등 기타 비밀을 누설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할 수 없다.
 - ② "을"은 "갑"이 제공한 비밀정보와 비밀정보에 기초하여 작성된 일체의 자료(허가를 받아 복사한 사본을 포함)를 신중한 주위를 가지고 관리·보관하여야 한다.
 - ③ "을"은 "갑"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갑"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와 비밀정보에 기초하여 작성한 일체의 자료(허가를 받아 복사한 사본을 포함)를 반환하여야 한다.
- 제7조 (손해배상) ① "을"은 본 계약에서 정하는 각 규정을 위반하여 "갑"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② 하도급 및 재하도급의 경우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의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을"은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 단 불가항력의 사유로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을"은 불가항력의 사유를 증명함으로 "갑"의 손해 배상 청구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
- 제8조 (정보의 지적재산권) ① "본 용역" 사업의 이행에 의해 발생한 산출물 및 결과물 (개발된 SW 모듈 포함)의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은 공동으로 소유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안 관련 산출물 및 결과물의 소유권, 지적재산권 및 2차적 저작물작성권은 "갑"이 소유한다.
- 제9조 (정보의 회수) "갑"이 제공한 자료·장비·서류·기타 당해 계약과 관련된 정보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을"은 정보의 원본 및 사본(수정물도 포함)을 남기지 않고 모두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에 발생하는 비용은 "을"이 부담하기로 한다.
- 제10조 (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기간은 "본 용역"의 계약기간과 동일하며, 양 당사자 의 합의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다.
 - ② 전항의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비밀유지의무는 제5조에 따른다.
- 제11조 (양도 등의 금지) "을"은 본 계약의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



게 양도, 하도급, 담보제공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12조(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내용은 "갑"과 "을"간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유효하게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있다.

제13조(준용규칙)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은 "갑" 과 "을"의 "본 용역" 사업 관련 계약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 (효력) 본 계약은 계약 체결시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다만, 본 비밀유지계약서를 체결한 일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가 다를 경우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에 발효되기로 한다.

제15조 (관할)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법적 분쟁의 해결은 "갑" 소재지의 관할 법원에 의한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19 . 5 . 2 .

갑 한국저작권위원회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1/2/5층 을 엘에스웨어(주) 서울 금천구 서부샛길 606 대성디폴리스 A동 1801호

성 명:임원선(인)

성 명:김 민 쉬

